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1.07.13 (수) 14:00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문희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1년 7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11년 7월 13일

3. 제안 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됨으로써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예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문 신설(안 제5조)

나. 사회적기업 등, 연계기업에 대한 도세감면 조문 신설(안 제9조)

다.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등)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가 삭제되어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